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3년 08월 16일

정선읍장  안이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채 *림	채 *림 1962-01-20	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5일장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8-01
김 *호	김 *호 1985-02-08	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1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8-01